

【붙임 2】

## 2017년도 안전보건공단 정규직 직원 채용공고 [시간선택제 5급]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래의 산업재해예방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우리 공단은 평등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 학점, 어학성적,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인재는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안전보건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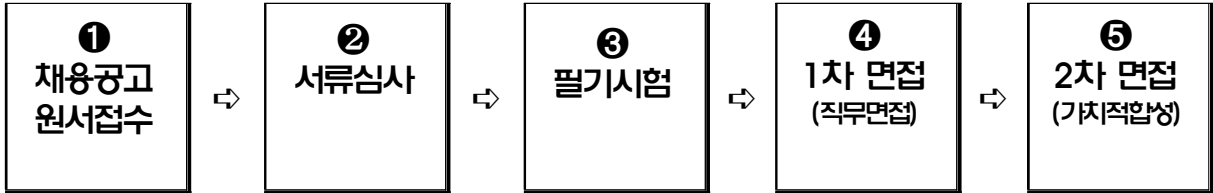
##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급	분야	인원	지원 자격 및 수행업무
	계	12명	-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li>▲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li> <li>▲ 지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자세한 내용은 직무설명자료 참고)</li> <li>▲ 우대사항 : 경력단절여성</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30시간 근무</li> <li>※ 임금, 휴가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li> <li>※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직원은 전일제로 전환이 불가하며, 전환 희망 시 경쟁을 통한 전일제 신규 채용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함</li> </ul>
전문직 5급 (시간 선택제)	안전	5명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보건	1명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건설	3명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경영	3명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 2. 전형절차 및 방법

### 가. 전형절차

- 시간선택제(5급)



※ 면접심사 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7. 10. 11.(수) 10:00 ~ 10. 30.(월) 18:00
-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직무능력기반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해당내용 기재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울산(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직·간접적으로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유의

####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직무설명자료」에 따라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능력(교육, 경험, 경력) 등 보유여부
  -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적합여부 등

#### 라. 필기시험

- 과 목 : 직무능력평가(직업기초능력, 영어, 한국사)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 100문항 110분

시험과목	세부평가항목	문항수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60문항
영어	영어활용능력, 이해도 등	20문항
한국사	한국사 전반 이해정도 등	20문항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2017. 11. 11.(토) 10:00 ~  
※ 필기시험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마. 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및 가치적합성 평가

- 면접방법 : 집단면접
- 심사항목
  - 1차면접(직무수행능력평가) : 직무관련 전문지식 보유정도, 현장 접목성 등 평가
  - 2차면접(가치적합성평가) : 공단 핵심가치·인재상 적합여부, 안전 보전에 대한 열정,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바. 임용예정일 : '17. 12. 31.(일)

※ 임용 후 입문교육(합숙)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채용 일정

구분	접수기간	구분	시험 및 심사 일자 (예정)	합격자 발표 (예정)
시간선택제 (5급)	10. 11.(수) 10:00 ~ 10. 30.(월) 18:00	서류심사	-	11.7.(화)
		필기시험	11.11.(토) 10:00 ~	11.16.(목)
		면접심사	11.23.(목)~11.24.(금)	11.28.(화)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다음 전형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고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 4. 우대사항 및 가점

가.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자, 대학원 이상 제외)
-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자, 대학원 이상 제외)
- 경력단절여성
- 양성평등목표제 적용

나. 가 점 :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장애인은 가치적합성평가(2차 면접)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 장애인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지원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가점 부여
  -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산재사망사고유가족,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 가치적합성평가(2차 면접)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배우자, 자녀)
    -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본인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가치적합성평가(2차면접) 시 아래의 가점 차등 부여
  - ※ 지원분야별 「직무설명자료」에서 제시한 관련자격증에 한함
  - ※ 지원자격이 자격증보유자인 경력직은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구분	기술사	기사·기능장	산업기사
가점	5점	3점	1점

## 5. 제출서류

- 서류심사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원본제시)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응시자전원)[가정법원 발급]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비수도권지역인재, 울산지역인재 해당자 [최종학력기준])
  - 경력증명서(해당자)
  - 지원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산재사망사고 유가족 해당자)
  -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등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장애인등록증(해당자)
  - 고용보험이력확인서 1부(경력단절여성 해당자)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6. 근무예정지역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각 근무예정지역별 기관현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cr.kr>) 참고
- ※ 공단 인력운영상 근무희망지와 달리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배치될 수 있음

## 7. 유의사항

- 공단은 평등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함**
  - ※ 지원자는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항목 작성에 유의할 것.
-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직급·분야별 「직무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채용직급·분야별 중복접수는 불가하며, 근무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 ※ 근무희망지역은 근무지 배치 시 참고용이며, 근무희망지와 달리 임의배치 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울산 예정으로 필기시험장소는 별도 공지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li> <li>▶최종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li> <li>▶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li> </ul>
이전지역인재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은 대학교 기준으로 적용)으로 공단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li> </ul>

※ 우대사항 세부 적용방법 및 기준 등은 공단 내부 기준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재개발부(052-7030-561~567)로 문의

**【참고자료】 안전보건공단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